「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2026년 10월 6일
2. **발 의 자:** 이상호 의원(1인)
3. **찬 성 자:** 김재우,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양진오,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전희정 의원(10인)
4.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5. **상정일자:** 2026년 10월 14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이 상 호 의원

2. 제안이유

○ 맨발걷기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맨발걷기길의 조성(안 제4조)
나. 맨발걷기길의 관리(안 제5조)
다. 부대시설의 설치(안 제6조)
라. 관리부서의 지정·운영(안 제7조)
마. 관리의 위탁(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김 근 태

○ 본 조례안은

- 맨발걷기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맨발걷기길 조성 및 유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